#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22-150 제안년월일 : 2022. 11. 28.

제 안 자:의회운영위원장

##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직개편 ('22. 10. 7.자)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및 신설 부서를 명시하 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상임위원회 소관 조직 명칭 변경 및 신설(안 제3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없음

다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# 2. 행정건설위원회

- 가. 새마포담당관에 속하는 사항
- 나.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다.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라. 관광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마. 재정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바. 교통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사.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아.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

#### 3. 복지도시위원회

- 가. 복지동행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나. 도시화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다.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라.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
관) ① (생 략)	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	②
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행정건설위원회	2. 행정건설위원회
<u>가. 마포1번가연구단에 속하는</u>	<u>가. 새마포담당관에 속하는 사</u>
<u>사항</u>	<u>항</u>
나.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	나.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
<u>는 사항</u>	<u>는 사항</u>
다. 행정관리국 소관에 속하	다.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
<u>는 사항</u>	<u>는 사항</u>
라.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	라. 관광경제국 소관에 속하
<u>는 사항</u>	<u>는 사항</u>
마. 관광일자리국 소관에 속	마. 재정관리국 소관에 속하
하는 사항_	<u>는 사항</u>
바. 교통건설국 소관에 속하	바. 교통건설국 소관에 속하
<u>는 사항</u>	<u>는 사항</u>
사.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	사.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
에 속하는 사항_	에 속하는 사항
<u>아.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</u>	<u>아.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</u>
소관에 속하는 사항	소관에 속하는 사항
3. 복지도시위원회	3

는 사항 나. • 다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③ (생략)

가. 복지교육국 소관에 속하 가. 복지동행국 -----

나. •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

③ (현행과 같음)

# 관 련 법 령

### □「지방자치법」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・처리하는 상임위원회
  - 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7조(위원회의 권한)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.

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